

李朝末 韓日間の 漁業에 適用된 領海 3海里原則에 관하여

朴 九 秉*

I. 序 言

- II. 日本人에 대한 韓海漁業의 許可와 領海 3海里에 관한 論爭의 發端
- III. 朝·日通漁章程의 締結과 領海 3海里 原則의 適用
- IV. 朝·日通漁章程 締結以後에 發生한 領海 3海里에 관한 誤解와 論爭
- V. 日本漁船의 不法的 領海侵犯
- VI. 漁業에 關한 協定の 成立과 領海의 被奪
- VII. 結 言

I. 序 言

公海의 自由는 歷史的인 學說과 慣行에 의하여 長久한 歲月을 거쳐 認定되었다. 中世까지 殆ど 廣大한 海洋에 대하여 領有를 主張하는 것이 支配的인 傾向이었다. 특히 中世後期에 있어서의 「이태리」의 都市國家, 「스페인」, 「포르투갈」, 英國등의 有力한 海洋國은 모두 廣大한 海洋의 領有를 主張하여 그것이 一般의 慣行이 되어 있을 程度였다¹⁾.

그러나 이 海洋領有傾向은 近世初에 이르러 挑戰을 받게 되었다. 그 두드러진 例로서, 英國의 「에리자베스」女王은 自國의 傳統的 海洋領有의 方針에 反하여 他國의 海洋領有를 強力히 反對하였으며 和蘭은 傳統的으로 一貫된 海洋領有 反對의 態度를 堅持하여 「포르투갈」의 印度洋領有主張을 強力히 反對하였다.

國際法의 아버지로 불리어지는 和蘭의 法學者 「그로티우스」(Hugo Grotius)가 有名한 「自由海論」(Mare Liberum)을 發刊한 것도 이 海洋領有를 反對함으로써 印度洋의 航海 및 印度와의 通商을 바라는 母國 和蘭의 政策을 支持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는 元來 「捕獲法論」의 一部로서 쓰여진 自由海論을 1609년에 獨立의 小冊子로서 秘密裡에 出版하여 國際法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原則의 하나인 公海自由의 原則을 理論적으로 體系化하였다. 「그로티우스」가 始終一貫 主張한 公海自由의 骨子は 海洋의 어떤 部分도 特定國이 領有할 수 없으며 航海나 漁業을 위하여 누구나도 이를 使用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²⁾.

* 釜山水產大學 教授

1) 橫田喜三郎編, 國際法, 東京 青林書院 1960年, pp. 136—137.

2) 朴鍾聲著, 海洋國際法, 서울 法文社 1962年 p. 20, 橫田喜三郎編, 前掲書, pp. 31, 137, 및 Francis T. Christy, Jr., and Anthony Scott, *The Common Wealth in Ocean Fisheries* (Baltimore: The Johns Hopkins Press, 1965) pp. 154—155.

이 「크로티우스」의 自由海論은 非常한 反響을 불러일으키기는 하였으나 當代에 있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反對論도 적지 않았다. 그 가운데서도 英國의 「셀덴」(John Selden)이 1635년에 發刊한 「閉鎖海論」(Mare Clausum)은 自由海論을 反駁한 것으로서 有名하다. 「셀덴」의 閉鎖海論에 숨겨져 있는 底意는 英國의 그 近海에 대한 領有의 主張을 正當化하고 또한 그곳에서의 外國人の 漁業은 許可를 받아야 한다는 英國의 政策을 擁護하려는 데 있었다.

그러하여 「셀덴」은 海洋은 萬人의 共有가 될 수 없음을 主張하고 그 領有가 不可하다는 것을 反對하였다. 그는 古代로부터 諸國의 慣行은 海洋의 領有를 認定하여 왔다는 歷史的 事實을 들어 그의 理論을 뒷받침하였다³⁾.

이와 같이 兩論이 對立된 가운데 17世紀 後半에 이르러서는 沿岸國이 主張하는 領有의 實際的 範圍는 漸次 縮少되는 反面 自由로 認定되는 海洋의 範圍는 漸次 擴大되어 갔다. 이에 所謂 着彈距離說(cannon-shot rule)의 主唱者로서 有名한 和蘭의 法學者 「바인켈스 후우크」(Cornelius van Bynkershoek)의 役割이 決定的으로 컸다. 그는 1703년에 「海洋 領有論」을, 1737년에 「公法諸問題」를 發刊하여 海洋의 一般의 自由는 慣行과 條約에 의해서 이미 確立되어 있다고하여 海岸에 接續한 海洋에 대해서는 領有를 認定하고 그 範圍는 海岸으로부터 大砲의 砲彈이 到達하는 距離까지라고 하였다. 이것이 有名한 着彈距離說이다⁴⁾. 이 着彈距離說의 出現을 契機로 自由海論과 閉鎖海論을 圍繞한 學者間의 意見의 對立은 漸次 解消되었고 沿岸海와 其他 領海를 除外한 海洋은 公海로서 自由가 保障됨으로써 公海自由의 原則이 成立되는 同時에 領海制度도 確立되었다⁵⁾.

最近까지 國際法上 確立된 原則으로 認定되어온 領海3海里原則의 誕生도 바로 이 着彈距離說에 根據를 두고 있는 것이다. 「바인켈스 후우크」自身도 勿論 着彈距離가 3海里라고 斷定한 일이 없었다. 그러므로 18世紀에 있어서 着彈距離說은 實際의 着彈距離를 둘러싼 論議를 통하여 많은 主張과 提案을 낳게 하였다. 1782년 「이테리」의 法學者 「가리아니」(Galiani)가 着彈距離를 3海里로 推定하게 되자 이는 着彈距離는 普通 1海 「리이그」(one sea league)⁶⁾로 본다는 것을 勘案한 英國에 의해서 1793년에 確立되었고, 이어서 이 距離는 英國과 「프랑스」에 의해서도 認定되었다⁷⁾. 一說에는 領海3海里原則은 和蘭 및 地中海 諸國의 着彈距離說과 「스칸디나비아」 諸國에 의해서 主張된 4海里의 妥協에 의해 이루어졌다고도 한다⁸⁾.

19世紀에 접어들면서 領海3海里說은 實踐과 條約을 통하여 國際法上 確立된 原則으로 認定되기에 이르렀다. 領海3海里原則이 歷史上 最初로 裁判文에서 引用된 것은 1800년에 言渡가 있는 Twee Gobreeders 事件의 判決文을 들 수 있다 1799년 英國官憲이 「프러시아」(Prussia)의 船舶을 拿捕함으로써 發生된 同事件의 判決文이 그것이다⁹⁾. 19世紀初에는 漁業協定에 있어서도 領海3海里原則이 適用된 例를 볼 수 있다. 즉 美國이 獨立한 以後 「카

3) 橫田喜三郎編, 前掲書, pp. 137—138, 橫田喜三郎著, 國際法Ⅱ, 法律學 全集 56. 東京 有斐閣 1970年 pp. 28—29.

4), (5) 橫田喜三郎編, 國際法 p. 38.

6) Scandinavian league는 大略 4海里로 치나 「유럽」의 大部分의 나라는 3 mile league를 使用한다. (Francis T. Christy, Jr., and Anthony Scott, *op cit.*, p. 156).

7) *Ibid.*, p. 157.

8) *Ibid.*

9) 朴鍾聲著, 上掲書, p. 33.

나다」沿岸의 「뉴유·핀들랜드」(Nefoundland) 漁場을 圍繞하고 일어난 英·美間의 漁業紛爭을 解決하기 위하여 1818年 英·美間에 맺어진 漁業에 關한 協定에서 一部 水域을 除外하고는 3海里 以遠 漁場에서만 美國漁船이 漁撈을 할 수 있다는 것을 規定함으로써 領海 3海里原則을 認定하였던 것이다¹⁰⁾. 이것이 歷史上 領海 3海里原則이 漁業에 適用된 最初의 事例이다.

위에서 概觀한 바와 같은 過程을 밟아 成立된 領海 3海里原則은 19世紀末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韓·日間に 締結된 漁業條約에서도 採用되었다. 筆者는 이 問題를 韓·日漁業關係를 論함에 있어서 한두곳에서 이미 斷片的으로 言及한바 있으나 本稿에서는 이를 綜合整理하고 加筆하여 領海 3海里原則의 適用經緯와 이를 契機로 하여 惹起된 諸問題들을 밝혀보 고자 한다.

II. 日本人에 對한 韓海漁業의 許可와 領海3海里에 關한 論爭의 發端

歷史上 日本人에게 韓國沿海의 特定水域에서의 漁業을 許可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500餘年前인 15世紀初의 世宗朝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즉 世宗 8年(1426)의 三浦開港以後 三浦(富山浦, 乃而浦 및 鹽浦)에서의 日本人의 漁業을 許可한 것¹¹⁾과 同王 23年 日本人에게 全羅道 南海에 位置한 孤·草島 釣魚를 許可한 것¹²⁾이 그것이다. 그러나 世宗朝에 獲得하였던 日本人의 韓海漁業權은 中宗 5年(1510)에 發生한 三浦倭亂을 契機로 完全히 剝奪 당하고 말았다¹³⁾. 그 後 韓海에서의 日本人의 漁業은 一切 不法化하였다. 그러나 西日本의 一部 漁民은 그 後에도 來漁하고 있었다. 그것은 密航密漁形態의 不法의 通漁였던 것은 말할 것도 없다¹⁴⁾.

이로부터 近 400년이 지난 19世紀末에 이르러 朝·日間に 締結된 朝·日通商章程 즉 在朝鮮國日本人民通商章程(朝鮮國=於デ日本人民貿易ノ規則)에 의하여 日本人은 또다시 韓海通漁權을 取得하게 되었다. 朝·日通商章程은 1883年 7月 25日 海關稅則과 함께 調印된 全文 42款의 通商條約으로서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同章程 第41款에 漁業에 關한 規定을 設定하고 特定水域에서의 日本人의 漁業을 許可하였다¹⁵⁾.

在朝鮮國日本人民通商章程

第四十一款

准日本國漁船 於朝鮮國全羅慶尙江原咸鏡四道海濱 朝鮮國海船 於日本國肥前筑前石見長門對朝鮮海面處 出雲對馬海濱 往來捕魚 但不准私將貨物貿易 違者將本貨入官 賣買其所獲魚類 不在此例 至其彼應納魚稅及其他細目 俟遵行兩年後 核其清況 逕行妥議酌定

10) 同上, pp. 34, 45, 今田清二著, 公海漁業의 國際規制 海文堂文庫 1959年, p. 1.

11) 海東諸國紀, 三浦禁約.

12) 世宗實錄, 卷94, 世宗 23年 11月 甲寅.

13) 中宗實錄, 卷16, 中宗 7年 8月 申酉 및 任戌.

14) 拙著, 韓國水產業史, 釜山 太和出版社 1966年, pp. 246—269.

15) 高宗實錄, 卷20, 癸未 6月 22日, 統監府編 韓國條約類纂 1908年 pp. 102, 112. 同規定 插入은 1882年에 締結된 朝·清商民水陸貿易章程의 第3條 規定에 의하여 當時 西海岸에 來漁하고 있었던 清國漁船이 黃海道와 平安道 沿岸의 漁業權을 獲得한데 刺戟받은 日本이 취한 對清對抗措置의 色彩가 濃厚한은 注目할 事實이다. (拙稿, 韓·日近代漁業關係研究—1876~1910—, 釜山水產大學研究報告, 第七卷 第1號(社會科學編), 1967, pp. 6—7 參照).

이 規定에 의하여 前年の 淸國人에 대한 平安·黃海 兩道沿岸의 漁業許可에 이어 日本人에게도 全羅·慶尙·江原·咸鏡 4道의 沿岸漁場을 開放하였던 것이다. 上記 條款에는 朝鮮國漁船도 日本國의 一部地方沿海에 出漁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表面上으로는 互惠의 平等을 假裝하고 있으나 當時의 우리나라 漁業은 沿岸膠着的인 原始的 漁業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日本沿海까지 出漁하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相對的으로 豊도가 낮은 日本沿海漁場에 出漁할 必要도 없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上記條款은 實質적으로 日本漁民의 一方的 韓海進出을 許容한 것이었으며 名目上的 虛權에 不過한 日本沿岸通漁權을 얻었을 뿐 實質적으로는 아무런 代價도 없이 韓海漁場을 日本人에게 開放하고 만 結果를 낳고 말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日本人의 垂涎의 對象이었던 水産資源의 寶庫 韓海漁場을 日本의 要求대로 그렇게 쉽사리 日本人에게 開放한 것은 아무리 強調하여도 지나칠 수 없는 朝鮮政府의 對日 外交上의 큰 失策이었다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1883年 10月 前記 朝日通商章程의 施行을 보게 되면서부터 日本漁船의 來漁隻數는 累年 增加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反比例하여 朝鮮漁民의 活動舞臺는 날로 좁혀지고 곳에 따라서는 生計에 重大한 威脅마저 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日本人의 朝鮮國海濱에로의 通漁는 처음부터 朝·日兩國 漁民사이의 衝突의 불씨를 안고 있었다. 朝日通商章程 締結直後부터 濟州島에 來漁하기 시작했던 日本潛水器漁業者의 蠻行으로 말미암아 惹起된 濟州島民과 日本漁民의 衝突은 그 代表的인 例로서 歷史적으로 有名한 것¹⁶⁾이었거니와 1888년에는 釜山地方漁民과 日本漁業者사이에서 漁場利用을 둘러싼 衝突이 發生하였다. 이 衝突事件에서 領海의 範圍問題가 最初로 學論되었다.

釜山地方의 漁業은 當時까지만 하더라도 대구와 청어를 主漁獲對象으로 하는 漁振(韓國在來의 一種의 定置網) 漁業, 防簾(漁箭과 類似한 建簾式 定置漁具) 漁業, 등이 主要한 漁業이었으므로 同地方漁民은 各自 一定한 定置漁場을 確保하고 平和롭게 漁業에 從事하고 있었다. 그러나 朝·日通商章程의 締結로 慶尙道에 所屬된 釜山이 日本人의 通漁區域에 包含되자 數多한 日本漁船이 釜山沿海에 來往하면서 各種의 漁撈活動을 하였다. 그러던 중 1888년에 이르러 當時釜山에 居留하면서 貿易商을 經營하던 日本 宮崎縣出身土族 諫山運平이라는 者가 數名の 漁夫를 雇傭하여 釜山沿海의 定置漁場 近處에 깊숙히 들어와 揮擲網(후릿그물, 즉 地引網) 漁業을 시작하면서부터 紛爭이 일어났다¹⁷⁾. 이 地引網漁業은 定置漁具에 들어가는 魚群의 魚路를 遮斷함으로써 定置網漁業者에게 廢業倒産의 威脅을 주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當時의 記錄에 의하면 釜山地方에는 130餘處의 漁場에 2千餘名の 漁民이 漁業에 從事하고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들 漁民이 日本地引網業者의 漁場侵入을 反對하여 當局에 抗議하였으므로 1888年 12月 4日 監理釜山港通商事務 李容植은 釜出駐在日本領事 室田義文에게 다음과 같이 照會하여 釜山漁民의 陳情內容을 傳하고 日本漁業者의 漁場侵入을 禁止시켜 줄 것을 要求하는 同時에 日本漁民의 操業禁止區域을 明示한 「漁基限界三條」를 提示하였다¹⁸⁾.

逕啓者 茲據我漁民等拱訴內開 民等以漁爲業 但自十月節 張網設箭 擧得大口魚青魚 先供御饌 再納稅錢 此果屢百年以來 定基實買 爲一百三十餘處 漁民恰爲二千餘名 則公稅私產重大自別 年年照舊安業矣 不意今年 日人諫山 率七八隻漁船 廣設揮擲網於民等設箭張網處 魚

16) 拙稿, 前掲論文 pp. 24—45 參照.

17) 日本外交文書, 第21卷, p. 365 文書番號 123 및 同(附屬書 1).

18) 同上, pp. 365—367 文書番號 123(附屬書 1).

路要衝之海面 一尾魚不入箭網 皆歸日人揮羅網 百餘漁基 一至廢革 則數千民生 并失產業 累萬經費 自歸損害 不勝憤寃 蓋民等設漁境界 自有定地 均點魚路 自有便利 茲開魚路海限 三條 另付乙紙 伏乞 將此知照日領事 飭該漁民 勿侵限內 速往限外 俾民等 各安漁業等情 准此查我民設箭網 均定於魚路要衝 而人莫敢侵害 是國內所共許與 守爲成規者也 另付漁民所守漁基界限乙紙 希貴領事 查照外 即飭該揮羅貴漁民 遵此勿犯 以便我民數千名漁業可也 希即照覆 茲爲照會

이와 같이 李監理는 釜山漁民이 (1)釜山에 있어서의 漁業의 產業의 重要性 (2)日本人 地引網業者가 忽然히 內灣 깊숙히 浸透하여 魚路를 遮斷함으로써 2千餘漁民이 廢業의 危機에 直面했다는 것 (3)定置漁具 設置에는 一定한 範圍에 걸친 漁場의 境界가 있다는 것 등의 要旨의 內容을 들어 日本人이 이 境界內에 侵入하지 못하도록 해 줄 것을 陳情한 事實을 밝히면서 別添 漁基(定置漁具設置漁場) 限界를 日本漁民이 遵守하도록 타이틀 것을 室田領事에게 要求하였다. 上記 照會에 言及된 漁基限界는 다음과 같다.

漁基限界三條

- 一 港內左右海面 漁箭林立 係是五六島海項 日本人揮羅 以朝島後洋定限
- 一 自葛湫至多大嶺沒雲臺海面 漁箭林立 日本人揮羅 以木道後洋定限
- 一 絕影島東南海面 漁箭林立 日本人揮羅 以鑰盆島南洋定限

이에 대하여 室田領事는 同年 12月 7日字 照覆에서 貿易規則(朝·日通商章程) 第41款에 는 漁基限界에 대한 何等의 明文規定이 없으므로 이를 日本人에게 納得시키기는 어려운 일 이기는 하나 貴國漁民을 妨害하지 않도록 注意를 시켜 設置된 定置漁具의 最極端의 杭柱로부터 30間(180尺) 以內에서는 可及의 으로 操業하지 않도록 日本漁民에게 諭告했으니 諒知 하기 바란다고 하였다¹⁹⁾.

李監理는 그의 要求를 實質의 으로 拒否한 것이나 다른 是는 上記한 室田領事의 照覆에 接하자 翌日 遲滯없이 室田領事에게 다음과 같은 照會를 發送하여 漁基限界를 侵犯하지 말 것과 各種 不法行爲를 禁止할 것을 促求하였다²⁰⁾.

逕啓者 本月初五日(陽 12月 7日) 接到貴第七十七號照覆 已悉²¹⁾一切查貿易規則第四十一款所載 兩國漁船 均可于兩國海濱捕魚等語 濱之一字 係指口外海邊而言 迥非港內可比 今貴漁戶 竟行入港設網 致我民累百年來資生之基 一朝廢棄 未免有違條約中濱字之意 當立約之初 想因我國船隻 不能遠出外海捕魚 是以允准貴民於海濱捕捉 原爲無害我民生業 又查萬國公法內載 凡往來各國 欲在來各國 欲在別國海面捕魚 只准于沿海三里以外 即我國十里 所謂沿海者 京係指外海邊岸而言 與四十一款濱字之意無異 並無准入內港捕魚明文 且四十一款後載應納魚稅 俟遵行兩年後 再行妥議酌定等語 今貴民 在我國海內捕魚已及五年 我政府 至今並未責納一錢魚稅 可見我國之待貴國 極敦有誼 茲以此事 呈上漁基界限 不過仰煩依此而行於貴民 毫無不便 而貴領事 即以條款內 無如何之明文爲言 實未可解 雖經貴領事飭諭漁民 千百八十尺²²⁾以內不爲網羅 而于我國漁民 仍是有損無益 可謂以五十步笑百步之語無異 今仍呈上漁基界限三條付呈 察務祈秉公辦理 曉諭貴漁民 遵照所開漁基界限 各安生業 毋得侵越騷擾 是爲至要 如此則貴我兩民 皆得公平矣 爲此照會 即希見覆可也 再查第四十一款內 只

19) 同上, p. 366 文書番號 123(附屬書 2).

20) 同上, pp. 366—367 文書番號 123 (附屬書 3).

21) (欄外註記朱書一)에 已悉사이에 脫字가 있을 것 같다고 記入되어 있다.

22) (欄外註記朱書二)에 千字는 譯者의 잘못일 것이라고 記入되어 있다.

有海濱捕魚字樣 並無准其上岸結搭窩鋪 及將所獲之魚 鋪於海灘晒晾等語 而貴漁民 既結屋而居 又復登岸晒魚 均屬條約中所無之事 貴領事 既以條約爲言 則此事何以自解 茲特一並奉詢 其應禁止與否 想貴領事自有權衡也 京希見覆爲禱 茲爲照會 敬具

이것이 바로 3海里 論爭의 導火線이 된 照會文이다. 朝·日通商章程 第41款에 明示된 日本國漁船의 通海海域은 全羅·慶尙·江原·咸鏡 4道の 「海濱」이라고만 되어 있어 領海의 範圍에 관한 아무런 規定도 없을뿐만 아니라 이미 朝鮮國漁民이 利用하고 있는 漁場에 대해서는 被害를 입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制限規定도 없었던 탓으로 李監理는 「濱」字의 뜻을 그나름대로 港口外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解釋하여 灣內의 釜山漁民을 保護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것은 濱字를 어떻게 解釋할 것인가 하는 問題에 앞서 이미 釜山地方漁民이 占有 利用하고 있었던 灣內의 定置漁場에까지 日本人이 侵入하여 莫大한 支障을 招來했던 것은 不當한 行爲로 斷定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問題는 一旦 論外로 하고 여기에서 問題되는 것은 李監理가 들고나온 萬國公法 즉 國際法의 3海里 問題이다. 上記 照會文中 「又查萬國公法內載 凡往來各國 欲在別國海面捕魚 只准予沿海三里以外 即我國十里 所謂沿海者」云云한 것은 李監理가 領海 3海里問題에 言及한 것임에는 틀림없으나 이것은 그가 領海와 公海에 대한 概念을 잘 理解하지 못하였고 또한 여기서 말하는 3리가 3海里(nautica mile)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事實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들이낸 것이다.

室田領事는 李監理의 照會를 接受한 3日後인 12月 11日에 李監理의 主張을 反駁하는 覆函을 보내왔다²³⁾. 그 內容을 보면 (1)通商章程 第41款 所載의 「兩國海濱에서 捕魚」云云한 句節中の 「濱」字에 관해서는 同條約書中 該文字에 대하여 港灣의 內外를 區別한 明文이 없는 만큼 널리 海濱을 指稱한 것으로 본다는 것. (2) 照會에서 援引한 「萬國公法에 所謂 3里以外云云」한 것은 本案에 대하여 이를 援引할 수 없다고 보며 萬若 日本人이 朝鮮國沿海 3里以內의 海濱에 들어가서 捕魚할 수가 없다면 前記 第41款을 約定할 必要가 없는 것이며 該款을 設定한 것은 日本人으로 하여금 널리 朝鮮國海濱에 들어가 捕魚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끝으로 李監理가 指摘한 漁業稅問題는 自己가 答할 수 없는 問題이고 日本漁民이 下陸하여 窩鋪를 짓고 乾魚場을 設置하는 不法行爲는 日本人漁探犯罪條規²⁴⁾에 의하여 處理하기 바란다고 하였다.

이 室田領事의 回答內容을 보건대 그는 公海自由의 原則과 領海 3海里原則을 어느程度 理解하고 있었던 것만은 分明하다. 事實上 朝·日通商章程 第41款의 規定은 우리나라 大部分의 領海를 日本人에게 開放한 規定이었으므로 領海 3海里原則을 認定한다 하더라도 當時 日本漁船이 朝鮮國海濱 3海里內에서 漁撈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다. 問題는 領海內에서의 그들의 漁撈가 許容되었다 하더라도 朝鮮國漁民의 既占漁場에까지 侵入할 수 있으나 하는 것에 焦點을 두고 前記 事件이 다루어졌어야 했을 것이나 李監理의 主張은 焦點이 어긋났을 뿐만 아니라 「沿海三里以外」問題를 들고 나와 弱點만 잡히게 되고 말았던 것이다.

이 論爭은 釜山에서 解決을 못보았으므로 當時의 署理督辦交涉通商事務 趙秉稷과 日本代理公使 近藤眞鋤에게로 옮겨져 앞서 李容植釜山監理와 室田義文 釜山駐在日本領事사이에

23) 日本外交文書, 第21卷, pp. 367—368 文書番號 123 (附屬書 4).

24) 正式名稱은 處辨日本人民在約定朝鮮國海岸漁探犯罪條規이며 1883年 朝日通商章程과 같은날 調印된 條規이다. 이는 處罰規定이라기 보다 實質的으로 日本人을 保護하기 위한 保護規定이었다. (拙稿, 前揭論文, pp. 8—9).

오고 간 것과 비슷한 內容의 主張과 反駁이 交換되었다. 즉 趙署理督辦은 同年(1888) 12月 19日 近藤日本代理公使에게 다음과 같은 照會를 發送하여 日本人이 漁場에서 撤收하도록 할 것을 要求하였다²⁵⁾.

大朝鮮署理督辦交涉通常事務趙 爲照會事 照得我曆十一月十四日 接據我釜山監理牒稱 據本港內外沿浦漁民等訴稱累百年來 設箭張網以漁爲業之地 日本漁民諫山 廣設揮羅於魚路要衝 一百三十餘處漁場二千餘濱手等 並失生意等情 將此 本月初二日 另立濱基界限三條 照會日本領事 在案 旋准該覆內稱 自濱箭最極端之杭柱 距三十間以內 則不爲網羅之意 曉諭我漁民等因前來 查此 有損無益 仍將三條界限照會又接日領事照網內稱 依前照會外 別無可計之道云云等因前來 查此事若不定限禁飭 我衆漁民 將至失生釐死 似有起開難測之境 謹將往覆照會四件稟呈 請自衙門照會日本公使妥辦 轉諭日本漁民 遵照已開限界 勿爲侵越 俾我衆漁民得以安業資生各等情 據此 念通漁縱有原約 漁採尙無定章 今此貴國漁民 遽入釜港灣內 侵奪我民漁場 恐涉無厭 細查我監理照稱 海濱之濱字 係指口外海邊 迥非港內可比 又查萬國公法各國願在別國海面捕魚 只准于沿海三里以外 所謂沿海者 亦指外海邊岸而言 與四十一款濱字之意無異等語 實屬確有可據 而貴領事覆稱 海濱之濱字 條約中對該文字 無港灣內外之區別 且云公法所謂沿海三里以外者 不可以此援引本案云云 果如貴領事之言 則實非體恤隣民 從公辨法 要之 我民之設箭張網 欲以來三面之魚也 遽被貴國漁民橫截長網於魚路要衝 而侵佔魚場 盡奪漁利 則該港數千漁戶之嗚咽齊訴 殊爲矜憫茲將我監理與貴領事往覆公文 亟應照會貴公使 請煩查照萬國公法 捕魚只准沿海三里以外之明文 轉飭駐釜山貴領事 洞諭該漁民諫山 廣 亟令撤網他往 毋奪我民漁場 免致失業滋事 寔爲公便 須至照會者

여기에서 보는바와 같이 趙署理督辦도 亦是 萬國公法の의 領海에 關한 條項을 들어 各國이 別國海面에서 捕魚코자 할 때는 오로지 沿海 3里以外에서 하는 것만 許容한다는 것을 強調하고 있다. 그도 李容植 釜山監理와 마찬가지로 沿海 3海里以外는 公海이므로 公海에서의 漁撈活動은 아무런 漁業協定을 必要로 하지 않는다는 것과 日本이 朝鮮國의 約定地方의 領海內에서 漁業을 하기 위하여 韓·日通商章程中에 漁業에 關한 規定인 第41款을 挿入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近藤代理公使에게 萬國公法の의 「捕魚只准沿海三里以外之明文」을 查照하여 釜山領事에게 轉飭하여 諫山으로 하여금 撤網他往하게 해달라고 하여 日前의 李監理의 主張을 되풀이하고 있다. 自國의 領海漁場을 日本人에게 넘겨 주고도 日本人이 領海內에서 漁業을 할 수 없다고 우긴 當時의 爲政者들의 無智에 새삼 놀라움을 禁할 수 없을 것이다.

이 趙署理督辦의 照會에 앞서 室田釜山駐在日本領事는 그와 李釜山監理사이에 벌어졌던 既述한 論爭에 關한 事實을 近藤日本代理公使에게 稟聞 아니라 本國政府에도 報告해 두었던 것이므로 日本外務大臣大隈重信은 同年 12月 24日字로 日本代理公使 近藤에게 訓令을 내리고 있는데 그 要旨는 日本人이 朝鮮近海에서 捕魚할 權利가 있는 것은 貿易規則(즉 朝

25) 高麗大學校附設 亞細亞問題研究所編, 舊韓國外交文書 第1卷(日案1), p. 606 文書番號 1323, (以下 日案은 모두 上揭書의 것을 말함). 日本外交文書, 第21卷, pp. 369—370 文書番號124 (附記附屬書 1). 統記, 第18 戊子 11月 17日條에는 다음과 같이 記錄되어 있다.

十七日 署理督辦趙 主事 李源號 金彰鉉 朴奎源 徐相輿 金永汝 安吉壽 李鉉相 丁大有 李在正 仕進 照會日館 照得我曆十一月 十四日接據我釜山監理牒稱 據本港內外沿浦漁民等訴稱 累百年來 設箭網張以 漁業之地 日本漁民諫山 廣設揮羅於魚路要衝 一百三十餘漁場 二千餘濱手等并失生意 貴國漁民 盡奪漁利 則該港數千漁戶 殊爲矜憫 貴公使 請煩按照萬國公法 捕魚只准沿海三里以外之明文 轉飭釜山領事 毋奪我 國民漁場 免致失業滋事

日通商章程) 第41款에 비추어 明瞭한 것이니 條約의 明文에 따라 徹頭徹尾하게 日本人에게 漁撈의 權利가 있다는 것을 主張하라는 것이었다.²⁶⁾

한편 署理督辦交涉通商事務 趙秉稷은 그의 要求에 대하여 1週日이 지나도 日本代理公使 近藤眞鋳의 回答이 없자 同年 12月 26日 다음과 같이 近藤代理公使에게 回答을 재촉하였다.²⁷⁾

敬啓者 我曆十一月十七日 據釜山監理牒稱 本港灣內 貴國漁民諫山廣²⁸⁾ 侵奪我民漁場一案 業經照請貴公使按照公法 轉諭免致滋事 實爲兩國漁民俱便 而兩利起見 等到七八天 尙無覆示 殊爲可憫 幸即賜覆 以便電飭釜監爲荷

이에 대하여 翌日인 27日 近藤 日本代理公使는 그 問答이 늦어진 理由를 다음과 같이 그 釜山領事에게 詢問한 일에 대한 回答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解明하였다.²⁹⁾

逕覆者 頃接來函內稱 我曆十一月十七日 據釜山監 里牒稱 本港灣內 貴國漁民諫山廣 侵奪我民漁場一案 幸即賜覆等因 准此 查此案 前准貴署督辦照會 惟因案內有要問駐釜我領事領情由 當經本使行文該領事官 去後 尙未接到何等回文 此以本使未便逕行照覆 相應函覆貴署督辦 請煩查照可也 肅此布覆

近藤日本代理公使가 室田釜山領事로부터 回信을 받고 李署理督辦에게 照覆을 띄운 것은 翌年(1889年) 1月 9日이었다. 이때는 그가 이미 前記한 大隈 日本外務大臣의 訓令을 받은 後였다. 이 訓令의 問答書로서 1889年 1月 25日에 發送한 文書의 乙號別紙에 近藤代理公使의 前記照覆이 실려 있는데 그 內容은 다음과 같으며 從前것에 비해 별로 새로운 것이 없³⁰⁾.

즉 (1)貿易規則 第41款에 日本國漁船은 朝鮮國 全羅·慶尙·江原·咸鏡의 4道 海濱에 往來捕魚할 수 있다는 明文이 있으며, 「海濱」2字는 港灣의 內外的 區別없이 沿海一帶를 包括的으로 指稱한 것인 바 日本人은 그 條約의 明文에 依據하여 獲得한 權利에 의해 前記 4道의 海濱의 어느 곳에서 捕魚하더라도 自由인데도 不拘하고 海濱 2字를 오로지 港口外의 海濱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解釋하는 것은 不當한 것이므로 이에 同意할 수 없다는 것. (2) 더구나 萬國公法에 各國이 他國의 海面에서 捕魚코자 할 때는 오로지 沿海 3里以外에서 이를 許可한다고 記載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는 何人의 公法을 援照하여 한 말인지 實로 그 出處를 밝히려기 힘든 바이기는 하나, 設令 公法上에 그러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兩國間의 特約의 明文을 抹殺하여 日本漁民의 捕魚를 禁止시키려는 것을 到底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었다.

「日本外交文書」에 의하면 이 照覆을 띄운 後 近 20日이 지난 1月 25日까지도 統理衙門으로부터 아무런 反應이 없는 것으로 보아 該件은 아마 이것으로 結末이 난 것 같다고 近藤代理公使가 말하고 있고³¹⁾ 그 後에도 이에 관한 記錄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釜山漁民의 要求는 貫徹되지 못했던 것으로 推測된다. 아뭏든 이 論爭은 國際法上的 領海의 範圍問題를 둘러싸고 韓·日間에 벌어진 最初의 論爭이었다.

이로부터 數個月後에는 鬱陵島에서 말쟁이 생겼다. 「統記」의 1889年 6月 20日(陰曆 5月

26) 日本外交文書, 第21卷, pp. 368—369 文書番號 124.

27) 日案, 1, p. 608 文書番號 1326.

28) 諫山廣이라는 이름은 이미 言及한바 있는 諫山運平을 말한 것으로 그 이름이 잘못 傳해진 것 같다.

29) 日案, 1, p. 609 文書番號 1327

30) 日本外交文書, 第21卷, pp. 370—371 文書番號 124)附記附屬書 2).

31) 同上, p. 369, 文書番號 124(附記).

4日)의 記錄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보인다³²⁾.

蔚島長報 探鯨日人三宅數矢與久井友之助等 犯探海濱三里內 藉稱古屋利曾有免稅之約 如是生隱不通商口岸 私將貨物賣買 罰金五十萬文 及紅隻進出海口 違報紅法酌罰 每缸墨洋百元 式 並以照會日館 該船長等處徵奉 以杜後弊事

즉 日本人 三宅, 久井 등이 來漁하여 海濱 3里內에서 犯探하고, 일찌기 古屋利沙의 免稅之約³³⁾이 있었던 것을 藉稱하여 不通商口岸에 密航하여 密貿易을 恣行하므로 이를 日本公使館에 照會하여 이에 대한 罰金 50萬文과 船隻進出海口 違報船法 酌罰 每船 墨洋 100元 (墨洋錄 즉 「멕시코」錄 \$100)씩을 該船長等處로부터 徵收함으로써 後弊를 없애도록 할 것을 鬱陵島 島長이 統理衙門에 要請한 것이다.

日本人은 그들이 韓海通漁權을 獲得하기도 前인 1881년에 이미 鬱陵島에 不法의으로 來漁한 일이 있었다. 즉 「日案」에 의하면 同年 6月 禮曹判書 沈舜澤이 日本漁船의 鬱陵島 不法漁撈를 禁止시켜 줄 것을 日本政府에 要求한데 대하여 日本外務卿代理 上野景範이 同年 月 20日附 公函에서 이는 實로 未曾聞의 일이나 곧 事實을 調査하여 兩國의 厚好에 障害가 없게끔 하겠다고 한 것이 있다³⁴⁾. 이것은 分明히 密漁였다.

그 後 1888년에는 濟州島에서 物意를 자아낸 바 있었던 古屋利沙의 潛水器會社 社員이 鬱陵島에 來漁하였다. 日本代理公社 近藤眞鋤는 署理督辦交涉通商事務 趙秉稷에게 의운 照會에서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事實을 밝히고 있다³⁵⁾. 즉 同會社 社員 姬野八郎之 및 三宅數矢 兩人은 潛水機器 2個를 裝載한 漁船 4隻을 몰고 7月 6日에 鬱陵島에 到着하여 9日 부터 操業을 開始하여 11日에 島長(徐敬秀)으로부터 朝鮮 政府의 關文이 아직 없으므로 漁業을 不許한다는 通報를 받으나 있고 그 후 徐島長은 日本人의 該島捕魚를 嚴禁하라는 政府의 命令을 받았으며 主事 尹某는 島長의 命을 받아 日本人이 捕獲한 鮑(진북) 1,250斤을 모두 入官하고 漁業을 禁했으므로 日本漁夫들은 同年 9月 5日 一旦 離島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다.

1888年 11月 24日 이와 같은 事實을 밝힌 近藤 代理公使는 鬱陵島가 韓·日通商章程 第 款41에 의하여 日本漁船이 往來捕魚할 수 있는 區域인 江原島에 屬함에도 不拘하고 該島 島民이 무슨 理由로 日本人의 漁業을 禁하고 日本漁民이 捕獲한 魚介를 入官하느냐고 抗議하고 이의 是正을 要求하였다³⁶⁾.

(日案)에 의하면 이무렵 日本人 30名이 鬱陵島에 不法의으로 上陸하여 築室掛旗하고 있다는 것을 指摘하고 있는데³⁷⁾ 이것은 近藤日本代理公使도 認定한 바와 같이³⁸⁾ 바로 前記한 日本潛水器漁夫였음에 틀림없는 것 같다. 그들은 同島에 公公然히 漁業根據地를 設置하고

32) 統記, 第20, 己丑 5年初 4日. 三宅數矢와 久井友之助는 그 後에도 鬱陵島에 와서 도둑질을 하여 말생을 일으켰다. (日案, 2, p. 9 文書番號 1510).

33) 「古屋利沙曾有免稅之約」이라고 한 것은 日本國 長崎縣下 對馬國 土族古屋利沙이 1884年 5月 潛水器會社를 設立하고 同年 濟州島沿岸에 來漁한 것을 濟州島民의 抗議로 濟州牧使가 古屋所有潛水器漁船의 操業을 2次에 걸쳐 制止한데서 發生한 損害賠償에 관한 約定(古屋利沙濟州漁採條合同)을 指稱한 것으로 보인다. 1886年 12月 6日에 맺어진 同約定의 第2款에 將次 朝·日兩國間の 訂約에 의하여 漁業稅를 徵收하게 될 때에 古屋利沙의 漁船14隻에 대해서는 5個月間 免稅한다는 것이 있다. (拙稿, 前揭論文, pp. 25—26 參照).

34) 日案, 1, p. 57 文書番號 74.

35) 同上, p. 601 文書番號 1315.

36) 同上.

37) 同上. p. 566 文書番號 1229, p. 576 文書番號 1248 및 p. 585 文書番號 1271 參照.

38) 註(35)와 同.

漁撈에 從事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鬱陵島通漁는 合法的이었다 하더라도 同島에 上陸하여 漁業根據地를 設置한 것은 條約에 違背된 不法의인 處事였던 것이다.

앞서 轉載한 「統記」의 記錄에 보이는 「犯探海濱三里內」의 問題는 上記한 일이 發生한 數個月後에 일어난 일이다. 여기에서 海濱 3里以內에서 漁業하는 것을 犯探라고 한 것은 既述한 釜山事件의 境遇와 마찬가지로 日本人이 韓海에서 操業할 수 있는 水域은 海濱3里以外라고 誤認한 데서 나온 말인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그것이 日本人들의 各種 違法行爲를 막고 來漁를 禁하기 위하여 내린 措置였기는 했겠지만 그 措置가 「海濱3里以外」라는 從來의 그릇된 主張에 立脚한 것이었던만큼 問題를 惹起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이 事件은 釜山の 境遇처럼 海濱3里 以外나 以內나 하는 식의 論爭으로까지 發展되지 않고 있다.

Ⅲ. 朝日通漁章程의 締結과 領海3海里原則의 適用

1888年末 日本地引網漁業者의 釜山灣內 操業開始를 契機로 벌어졌던 論爭이 시작된 때부터 約 1年이 지난 1889年末에는 朝日通商章程 第41款의 施行細則의 性格을 띤 朝日通漁章程(朝鮮日本兩國通漁章程·日本朝鮮兩國通漁細則)이 締結되었다. 이 朝日通漁章程은 前記 朝日通商章程 第41 款의 末文, 즉 「至其彼此應納漁稅及其他細目 俟遵行兩年後 核其情況 逕行妥議酌定」의 明文規定대로 朝日通商章程 遵行 2年後에 創定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었으나 6年後인 1889년에 이르러 비로소 締結되었다. 이와 같이 同章程의 締結이 遲延된 主要한 理由는 漁夫稅額의 決定에 있어서의 意見對立과 漁業稅 納付를 꺼리고 無稅通漁의 期間을 延長하려는 日本側의 遲延作戰에 있었다³⁹⁾.

全文 12條로 된 朝日通漁章程은 다음에 轉載하는 바와 같으며 이 章程에서 領海3海里原則이 韓日間에 最初로 適用되었다⁴⁰⁾.

朝鮮兩國通漁章程 日本

朝鮮開國四百九十八年十月二十日

於漢城調印

大朝鮮國政府 據朝鮮開國四百九十二年六月二十二日 日本明治十六年七月二十五日 兩國全權大臣協議訂正之 朝鮮日本通商章程第四十一款 欲爲往來捕魚於兩國海濱者 定漁業稅 立管辦章程 朝鮮政府 委任督辦交涉通商事務閔鍾默 日本政府 委任代理公使近藤眞勤 各奉委命會議 定立 左開各條

第一條 凡於兩國議定地方海濱三里 依日本國海里 算法已下準之 以內 欲營漁業之兩國漁船 須詳記 其船廣幅之尺數 所有主之貫籍姓名 及搭坐人員 由其船主或代理人 繕具稟單 日本漁船 呈經其領事官 交通商口岸地方官署 朝鮮漁船 呈交議定地方郡區役所 俟經查驗其船 請領准單 但漁業時 必須攜帶准單

第二條 領漁業准單者 照左須開算法 完納金額 以充漁業稅 而此准單 自領收之日起 至滿一年間 爲有其效用者

39) 拙稿, 前揭論文, pp. 12—16 參照.

40) 大韓國政府財政顧問部編纂, 大韓國財政各種法規類, 龍山度支部印刷局, 1907, pp. 1259—1262.

搭坐人員	十名已上	日本銀貨	拾圓
同	五名已上 九名已下	同	伍圓
同	四名已下	同	參圓

第三條 領有漁業准單之此國漁船 雖得將其捕獲魚介 販賣於彼國海濱地方 然彼國政府 爲衛生起見 或因其他事故 通行禁止販賣之魚介類 不准販賣

第四條 兩國漁船 雖領有漁業准單者 非得特准 則不准於兩國海濱三里以內 捕獲鯨鯢

第五條 此國漁船 於彼國海濱三里以內 勿違地方禁制 以用妨害魚介 及海產蕃殖之方法 並於各地方 正當限以魚介種類 禁制其捕獲之時期 則彼此漁民 斷勿捕獲其魚介

第六條 兩國地方官署之官吏 倘若認爲照行此章程 所必要 則可得查驗在該地方海濱三里以內之彼國漁船 若有違犯者 並行押留 但朝鮮地方官 押留日本船時 當將其由 迅速報之就近日本領事官 請照此章程處辦

第七條 遇有不領漁業准單 於海濱三里以內 捕獲魚介 或欲行捕獲之漁船 處五圓已下罰金 沒收其所捕獲之物

第八條 遇有不帶第一條准單者 犯第四條者 及拒第六條地方官吏之查驗者 處壹圓已上貳圓已下罰金 但犯第四條者 另行沒收其所獲之鯨鯢 僞報第一條搭坐人員 短納稅金者 處二倍其短額之罰金 販賣第三條禁制之魚介 及用第五條妨害魚介 及海產蕃殖之方法 或捕獲禁制之魚介者 在日本海濱 則照地方規則處辦 在朝鮮海濱 則處壹圓已上貳圓已下罰金 沒收其所捕獲之物

第九條 遇有將漁業准單借與他人 於海濱三里以內 捕獲魚介者 不論借與者假用者 均處二倍該准單稅額之罰金 沒收其所捕獲之物

第十條 在兩國議定地方外之海濱三里以內 捕獲魚介者 沒收其漁船漁具及其所捕獲之物

第十一條 據此章程應行處辦者 在日本國海濱 則歸日本地方被判所之被斷 在朝鮮國海濱 則由其地方官 知照就近日本領事官 歸其裁斷

第十二條 施行此章程後 遇有應行增減之事 則得彼此妥議改更 至漁業稅照此章程 自蓋印日起 限二年施行後 看漁利有無 再行商改 彼此記名 蓋印 以昭憑信

大朝鮮國開國四百九十八年十月二十日

督辦交涉通商事務 閔種默 印

大日本國明治二十二年十一月十二日

代理公使 近藤眞鋤 印

여기에서 보는 바와같이 朝日通漁章程의 主要한 內容은 兩國의 3海里 以內에 通魚하는 漁民에 대한 通漁手續, 漁業稅, 捕鯨特許, 團束規則 등에 關한 것이다. 第1條에 海濱3里의 文句를 插入한 것은 그것이 日本海里的 算法에 依據한다고 되어 있어 若干曖昧한 점 이 없지는 않으나 이것은 當時 世界的으로 確立된 國際法의 慣例로 認定되고 있었던 領海 3海里原則을 適用한 것임에는 틀림 없다. 第1條, 第4條, 第5條, 第6條, 第7條, 第9條, 및 第10條에 모두 「海濱三里以內」라는 句節을 넣어 條文解釋上的 混同을 없애려고 努力한 點이 窺보인다.

日本은 領海3海里原則을 適用한 이 通漁章程의 草案을 同章程이 締結되기 3年前인 1886年에 作成한 바 있었다. 여기에서 暫時 그 經緯를 살펴보기로 한다. 朝日通商章程이 締結된 1883年 7月부터 起算하여 2年間の 期限이 거의 찬 1885年 6月 12日에 督辦交涉通商事務 金允植은 朝日通商章程 第41款의 規定에 따라 漁船收稅規則을 訂立할 것을 日本代理公使

近藤眞鋤에게 正式로 提議하였다. 이에 대하여 近藤 代理公使는 同月16日字 回答에서 本國政府의 訓令을 未接하였는데 即時 訓令을 稟請한 後에 協議토록 하겠으니 朝日通商章程 第41款 所載의 漁稅 및 其他細目 등에 대해 朝鮮政府가 提議코자 하는 一切의 款項을 먼저 提示하여 주기 바란다고 하였다⁴¹⁾. 그러나 近藤代理公使는 同月 23日에 歸國하고 말았으며 後任으로 高平小五郎이 日本臨時代理公使로 到任하였다. 新任 高平 臨時代理公使는 同月 30日 朝日通商章程 第41款의 漁稅 및 其他細目的 約定期限에 達했으므로 이에 대한 訓令을 바란다는 內容의 機密 第90號를 日本外務卿井上馨에게 發送했다⁴²⁾. 그러나 日本政府는 이에 대한 協議를 이렇다할 理由없이 미루어 오다가 翌年(1886年) 5월에 이르러서 비로소 井上外務大臣이 그들이 作成한 通漁章程案을 高平 臨時代理公使에게 送付하고 同案의 主旨에 따라 通漁章程을 朝鮮政府와 協議訂約하라는 訓令을 내렸다⁴³⁾. 이와 같은 經路를 밟아 通漁章程案은 日本側에 의하여 最初로 만들어졌는데 同案은 稅額의 引上和 若干의 字句修正程度의 修正을 거쳐 最終章程으로 確定되었다⁴⁴⁾.

朝日通商章程에 보이는 海濱3里에 관한 規定은 이미 前記 原案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으며 이는 修正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것으로써 日本은 領海3海里 論爭이 벌어지기 以前인 1886년에 이미 領海3海里原則을 漁業에 適用시킨 計劃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歐美에 있어서는 領海3海里原則이 漁業에 適用된 事例가 19世紀 初인 1810年代에 發見된다는 것은 既述한 바 있으나 韓日間에 있어서는 19世紀末 朝日通漁章程에서 最初로 이原則이 適用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漁業에 관한 限 韓日間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東洋에 있어서 領海3海里原則이 適用된 最初의 事例일 것이다.

IV. 朝日通漁章程 締結以後에 發生한 領海3海里에 관한 誤解와 論爭

朝日通漁章程 第1條에 兩國漁船은 各國의 議定地方 海濱 3里以內에 往來捕魚할 수 있다는 明文規定이 設定된 以後에도 朝鮮國官吏들이나 識者들 가운데는 領海海里에 관한 認識 不足으로 이를 誤解하는 者들이 있었고 이로 말미암아 또다시 論爭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그 一例를 들어보면, 日本의 水産局技士를 지낸 바 있었던 水産專門家 關澤明清이 1893年 2月 南海岸의 漁業을 實地踏査하고 그 結果를 釜山에서 本國政府에 報告한 「朝鮮漁業視察 概況報告」에는 그가 金鰲島 踏査時에 同島의 有志 吾衛將 李豐榮과 만나 領海3海里問題에 관하여 對談한 內容을 傳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⁴⁵⁾.

『予輩가 李와 對話하는 가운데 怪異한 일이 한가지 있었다. 李가 談話중에 日本人이 朝鮮近海에서 漁業을 하는 것은 當然히 沿岸3里以外일 것 云云한 것이 그것이다. 내가 이를 責望하니 論爭이 벌어질 것을 꺼려 못들은척 하고 말았으므로 그것으로 끝나기는 하였으나 通漁規程에는 3里以內云云의 明文이 있을뿐만 아니라 元來 3里以內에서 漁業하는것은 兩國 모두 掣肘할 수 없는 것임은 法理의 許容하는 바다. 그런데 李와 같은 識者라고 할 수 있는 者마저 3里内外의 畛別을 못함은 實로 怪訝해 마지않는 바이므로 釜山에 돌아온 後는 이를 室田總領事에게 報告하였다. 室田總領事의 말에 의하면 「이러한 誤謬는 唯獨 李

41) 日案, 1, pp. 236—236 文書番號 486.

42) 日本外交文書, 第22卷 pp. 371—372 文書番號 156 (附記1).

43) 同上, p. 373 文書番號 156(附記 2).

44) 同上.

45) 關澤明清, 朝鮮漁業視察概況報告, 伊藤博文編, 朝鮮交涉資料 中卷, 秘書類纂刊行會, pp. 246—248.

뿐만 아니라 朝鮮의 上流社會에서도 亦是 往往 그러한 謬見을 지니는 者가 있다. 그 原因은 첫째 일찌기 萬國公法을 韓文으로 翻譯함에 있어서 그 沿海의 主權이 三里以內에 있다는 原書의 語意를 그르쳐 三里以外라고 翻譯함으로써 讀書人은 이로因하여 그 誤謬를 踏襲하게 된 것이 그 遠因인 것 같다. 또 하나는 일찌기 統理衙門에서 日韓通漁規程의 改正을 日本政府에 要求하고자 먼저 그 草案을 作成하고 各地方官에게 諮詢하여 意見을 들은 적이 있는데 該草稿中에 亦是 三里以外云云의 句節이 있다. 地方官은 이로써 이미 改約이 成立된 것으로 誤解하게 된 것이 그 近因인 것 같다. 그러므로 李와 마참까지의 謬見을 지니는 者는 現在 地方官中에도 亦是 있는 것 같다」고 하였다. 日韓通漁規程이 오늘날 儼然히 存在하는 以上 그러한 謬見은 그들 自身이 지니는 것으로서 우리에게는 關係가 없다고 할지 모르나 그러한 謬見은 그 影響이 畢竟 直接的으로 實業者에게 미쳐 本邦 漁人에게 괴로움을 주는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므로 政府는 朝鮮政府와 談判하여 三里以內以外의 區別을 물리지않도록 注意하라는 趣旨를 朝鮮地方官에게 告諭를 發하게끔 할 것을 懇切히 바라마지 않는다.』

이로써 漁業條約에 領海3海里原則이 適用된 後에도 領海의 概念을 正確히 把握하지 못한 者가 많았다는 事實의 一端을 窺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引用된 室田總領事의 말에는 疑問이 있다. 그는 既述한 바와 같이 이미 1888년에 이 問題를 둘러싸고 李容植 釜山監理와 論爭을 벌인 일이 있었던 人物이다. 室田 總領事는 領海에 대한 誤解가 첫째 萬國公法의 翻譯을 잘못된 탓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는 翻譯의 잘못이었다기보다 解釋의 잘못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領海3海里以外的는 公海라고 한 것을 보고 日本國漁船이 朝鮮國沿岸에 來漁할 수는 있으나 公海에서만 操業할 수 있다고 解釋했던 것으로 보인다. 當時로서는 沿海 3海里以內以遠을 莫論하고 外國漁船이 韓海가 사이에 來航하여 漁撈해서는 안된다는 觀念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으로 條約의 締結로 沿海海里만 侵犯하지 않으면 그 以遠海域에는 來漁하는 것을 許可한다고 解釋했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또 日韓通漁規程, 즉 朝日通漁章程을 改正하려고 그 草案을 만들었을 때에 三里以外云云했다는 것도 亦是 上記한 바와 같은 解釋의 잘못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름든 이와 같은 誤解는 또다시 外交上의 問題를 惹起시키게 되었다. 즉 朝日通漁章程이 締結된 後 11년이 지난 1900年末 馬山을 中心으로 한 一部地方에서 地方官吏가 朝日通漁章程에 依據하여 日本人에게 漁業을 許可한 海域은 既述한바 있는 海濱 3里以外라는 것을 새삼 主張하여 同地方沿岸에서의 日本人의 漁業을 制止하려고 함으로써 論爭이 벌어졌다.

1900年 11月 21日 馬山駐在日本領事 坂田重次郎은 日本外務大臣 加藤高明앞으로 發送한 公文에서 事理를 모르는 朝鮮國地方官은 대체로 朝日通漁章程에 日本人이 沿海 3里以內에서 漁業을 하는 것을 禁하고 있는 것으로 解釋하여 놀라운 程度의 誤解를 하고 있으며 近來 朝鮮沿海에서 朝日 兩民사이에 紛爭이 頻發하는 것도 바로 이 誤解에 基因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있다. 이어서 同公文에는 다음과 같은 事實을 밝히고 있다.⁴⁶⁾

(1) 坂田領事는 昌原監理 韓昌洙에게 照會하여 巨濟, 鎭海, 固城 및 熊川의 各關係沿海郡守에게 前記한 誤解를 풀게 하고 또한 各各 嚴重히 訓飭하는 公文을 發送하는 同時에 이와 同文의 別紙寫本⁴⁷⁾을 日本領事館에도 交付하여 兩國漁民間의 葛藤의 發生으로 日本領事

46) 同上, 第33卷 pp. 126—127 文書番號 108.

47) 同上, p. 127 文書番號 108(附屬書). 이 寫本은 다음과 같이 日譯되어 실려 있다.

館附 巡查나 通漁組合本部出張所⁴²⁾의 事務員이 各沿海地方에 出張할 때는 前記 訓令을 携帶시켜 郡守는 말할 것도 없고 洞首 및 村民中의 有志들에게도 一一히 이를 提示하여 前記 誤解를 풀도록 努力하게끔 하도록 하였던 바 그 後의 報告에 의하면 그 結果가 매우 良好하다. (2) 그런데 前記한 誤解는 地方郡守에게만 그치지 않고 意外에도 馬山港監理마저 그 解釋을 잘못하여 兩國通漁章程에 日本人에게 漁業을 許可한 것은 오로지 海濱 3里以外라고 解釋하여 이를 굳게 믿고 있는에는 實로 놀라지 않을 수 없으며 監理가 그러하므로 監理署 屬官 各郡守가 이를 잘못 解釋하는 것은 當然한 일이라 하겠으나 그 監理의 誤解에 대해서는 通譯生國分이 數日에 걸쳐 反復 說明한 結果 겨우 了得시킬 수 있었으므로 前記한 正誤의 公文도 發送시킬 수 있었다. (3) 그리고 愛媛縣漁民 末原政吉이 앞서 巨濟島 加育梁에서 漁業中 韓人 金某가 自己의 漁張⁴⁹⁾에 妨害가 된다 하여 郡守에게 訴願한 結果 郡守는 馬山 監理로부터 日本人이 沿岸 3里以內에서 漁業하는 것은 韓日通漁章程에 의하여 禁止되어 있다는 訓令을 받았다는 것을 구질로 삼아 前記 金某가 日本漁夫에게 漁獲物의 引渡를 強談한 나머지 끝내 雙方의 爭鬪를 惹起시킨 件에 관해서는 即時 當港監理와 面談하여 정말로 그와 같은 訓令을 내렸는가의 與否에 대하여 嚴重히 따졌던바 同監理는 決斷코 그러한 公文을 發한 일이없다고 하였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國分 通譯生이 啓蒙하기 以前에는 或시 實際로 如斯한 公文을 發한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나 過般以來 同監理도 이미 前日의 誤謬를 悟了하고 또한 前述한대로 正誤的 公文을 發한 바 있으므로 特別히 追求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는 것 등이다.

附加의 說明의 必要없이 領海 3海里原則에 대한 舊韓國政府 官吏들의 沒理解와 이로 인한 紛爭등이 잘 밝혀져 있다. 그리고 日本漁夫들이 沿岸 어느 곳이고 無分別하게 來侵하여 韓國人의 定置漁業에 支障을 招來했던 것도 엿볼 수 있다.

同公文의 欄外朱記에는 「...監理를 비롯하여 地方官이 通漁規則을 誤解했다는 것은 정말로 誤解한 것인지 또는 誤解한 것처럼 꾸민 것인지 不分明하다」고 하는 句節이 보인다. 그러나 이는 當代 官吏들의 國際法에 대한 無知로 미루어 보진대 故意로 誤解한 것처럼 꾸민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하여 馬山沿海地方에 있어서의 爭紛은 一段落되었다 그 後 이 問題에문에 論爭이 다시 벌어진 記錄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韓國側은 從來의 主張을 더 以上 固執하지 않았던 것 같다. 뿐만아니라 日本의 韓半島에 대한 支配權의 強化와 正比例하여 好漁場은 日本人들에게 蹂躪당할대로 당했던만큼 그러한 論爭이 再發할 餘地가 없었을 것이다.

訓令第 號(謄文訓讀)

沿海地方(ニ)韓日兩國漁民之紛爭(每)式日斯生(シテ)訴牒寫雪片來投(ス)交際焉和氣易損(ス)各該郡(ガ)苟能觸熟章程(シテ)認照行(セバ)寧有若是(ラン)效(ニ)發訓(スルニヨリ)嗣後(ニ)一邊通漁章程(スルカラ)曾前條約(スルトコロ)時(ニ)認許日本漁民(ヲ)各郡沿海三里以內(ニモ)通行漁業(セシムスナハチ)一依三里以內其行漁業之約旨(シテ)遍諭我漁民等(ヲシテ)更無紛爭失好(セシムルコト)爲可
光武四年十月二十五日

昌原監理 韓 昌 洙

沿海巨濟熊川鎮海固城各郡守座下

43) 여기에서 通漁組合本部라고 한 것은 1900年 5년에 日本人이 設立한 朝鮮海通漁組合聯合會를 말하는 것이다. 同聯合會는 本部를 釜山에 두고 馬山 木浦 元山 仁川 等地에 出張所를 두고 있었다. 처음에는 本部가 日本福岡에 있었고 本部出張所는 釜山에 있었으나 1901年 8月 1일부터 釜山出張所를 廢하고 本部를 釜山에 옮겼다. (葛生修亮著, 韓滿通漁指針, 東京 黑龍會出版, 1903, p. 37).

49) 漁張은 漁帳(魚帳)의 誤記이며 漁帳이란 南海岸一帶에서 대구 및 정어를 주로 漁獲한 比較的으로 規模가 컸던 定置網을 말한다.

끝으로 한가지 附記해 둘 것은 朝日通漁章程에는 오늘날 通用되고 있는 用語로서의 海里 즉 國際海里 (international nautical mile=1,853m)로서의 3海里라는 것이 明白히 되어 있지 않고 「日本海里算法에 의한 海濱3里」라고만 되어 있었던 關係로 里數의 概念上的 混同이 생겼다는 事實이다. 朝日通漁章程 第1條의 規定에 依據하여 우리 나라 海關에서 日本人通漁者에게 發給한 准單(執照, 즉 漁業許可鑑札)에는 다음 寫本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日本海里算法에 의한 海濱3里를 朝鮮里 30里로 換算하여 表示하고 있다. 朝鮮里數로 30里라면 '오늘날의 海里로 따져 近 7海里나 된다.

朝鮮側에서는 沿海 3里를 日本의 陸上里數 3里와 同等視한 것이다. 日本 陸上里數 1里는

照執魚捕船漁本日准允照邊間海……	
監理……港通商務某	爲
給日本漁船捕魚執照事。照得本監理奉到統理衙門行知內開 朝鮮 通商章程	日本
第四十一款欲爲往來捕魚於兩國海濱者。定漁業稅立管辦章程。經統署督	
辦與日本公使會議。定立章程十二條。准日本漁船在全羅、慶尙、江原、咸	
鏡四道海濱三里 朝鮮里三十里以內捕魚等因。今由駐本港日本領事官報知海	
關有日本國人……船名……願遵章程請發給捕魚執照。即經本監理會同各海	
稅務司。照章程冊。編列該漁船於第……號。完納日本銀……元收訖。茲合	
發給執照。並章程一本。爲此照給該漁船人等收執以憑。隨時查驗。限一年	
期滿繳鎖。該漁船只准捕魚。但不准私運貨貿易。務督遵循毋違。以免究罰。	
切切凜遵。須至執照者。	
計開	
第……號日本……船名……漁船一隻	
船身計長	何丈何尺何寸
艙口計寬	何尺何寸
船腹計深	何尺何寸
船主何某貫籍……縣……國……村	
船夥搭坐人何某	
共訂人丁何名	
右照給第……號日本……漁船收執	
光緒何年何月何日給	
限何年何月何日繳鎖	

關澤明清·竹中邦香同編, 朝鮮海通漁事情, 1893年, pp. 16—17.

下啓助·山脇宗次共編, 朝鮮水產業調查報告, 1905年, pp. 8—9.

韓國陸上里數의 約 10里에 該當하기 때문이다. 條文自體가 애매하여 그러한 混亂이 생겼던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한편 當時 이와 같은 准單이 수없이 發給되고 長期間 通用되고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日本側으로부터 아무런 是正要求가 없었던 것은 兩國이 모두 相對國의 里數에 關한 換算法을 等閑視했던 同時에 雙方 모두 領海에 關한 認識이 不足했던 탓이었다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V. 日本漁船의 不法의 領海侵犯

朝日通漁章程에 明示된 바와 같이 日本人은 韓海의 3海里以內의 領海에 往來捕魚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海濱 3里以內의 領海에서의 漁撈은 同章程 第1條 및 第2條에 明示되어 있는 바와 같이 一定한 通漁手續을 밟고 漁業稅를 納付하여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數 많은 日本人漁船은 通漁章程을 無視하고 不法의 領海內에 侵入하여 操業하고 漁業稅도 通脫하는 密航密漁를 恣行하였다. 密漁가 얼마나 盛行되었던가에 대한 實證資料는 豊富하나⁵⁰⁾ 여기에서 張皇하게 枚擧할 必要는 느끼지 않으므로 代表的인 것만 한두가지 指摘해 보면, 1897年 8月 10日 在釜日本領事 伊集院彦吉이 日本外務次官 小村壽太郎에게 日本人의 韓海通漁事情을 報告한 가운데 「通漁者中 三分의 二는 鑑札을 받지 않은 者라고 하므로 적어도 過半은 規則違反者로 보아 大差없다」⁵¹⁾고 하여 日本人 스스로가 密漁의 盛行을 暴露하였고 1901年의 「農商工部來去案」에는 當時 密漁船이 얼마나 많이 橫行하고 있었는가를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⁵²⁾.

開國四百九十八年에 韓日通漁章程을 訂正하온바 該章程 第一條에 漁業時 必須携帶准單이라 하고 第七條에 遇有不領漁業准單 於海濱三里以內 捕獲魚介 或欲行捕獲之漁船 處五圓已上拾五圓已下罰金 沒收其所獲之物이라 하오나 海上檢査는 無船莫可이온디 事力不逮하야 尙此未遑하음고 一任 稅務司하오니 五六島以內로 釜山에 入하는 漁船은 給單課稅하오나 不過百千之一이오 五六島以外로 西南各海에 駛往하는者 不知幾千艘나 漏稅가 幾倍에 至호지라 寧不可惜이오며 漁船이 沿海孤島에 來往하야 侮辱殘民하야 勒婦女 掠貨財를 視若尋常하니 尤切憤惋하온지라 從茲以往으로 通漁地方沿海要隘에 置檢察之員하며 設巡査之船하면 鉅萬稅額을 可以收納이오 海隅生靈을 可以支保이오며 (下略).

일찍이 關澤明清이 그의 著書 「朝鮮海通漁事情(1893年刊)에서 日本人의 密漁를 言及한 가운데,

「내가 가장 大聖疾呼하여 警誥시키고자 하는 것은 無免許로 出稼漁業을 하는 것이다. (中略) 或시 沿海三里以內에 들어가는데는 免許가 必要할지라도 三里以外에서 漁業을 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必要가 沒이있겠는가하고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이것은 一理가 있는것 같지만 實際로 海上에 나갔을 때는 三里內外의 標識가 있는것도 아니므로 이를 界斷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뿐만 아니라 大部分의 魚類는 먼 海上에서 보다 沿岸에서 漁利가 많은 것이므로 그러한 遁辭는 이로써 罪를免하기에 充分하지 않다」⁵³⁾고 한 것에서도 알 수 있는바와 같이 日本漁船은 거의 모두가 海里內의 領海에서 操業했던 것이므로 通漁手續을 밟지 않고 漁撈에 從事한 漁船은 곧 密漁船이었다고 看做할 수 있는 것이다. 日本漁夫들의 無斷上陸 및 各種行悖는 姑捨하고라도 領海 3海里는 莫大한 隻數의 日本漁船의 不法의 侵犯으로 말미암아 거의 有名無實한 것이었다는 것을 看做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領海 3海里原則은 일찍이 1889年 朝日通漁章程 調印時에 適用되었다는 것은 特記할事實이나 領海3海里原則이 日本密漁船의 來往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遵守되지 않았던

50) 具體의 事例들은 抽稿, 前揭論文, pp. 47—50, 및 抽稿, 韓國漁業技術史, 高麗大學校民族文化研究所編, 韓國文化史大系 Ⅲ 科學技術史 1968年, pp. 249—255 參照.]

51) 日本外交文書, 第30卷, p. 1201 文書番號 670.

52) 農商工部來去案, 照會 第17號, 光武 5年 12月 12日.

53) 關澤明清·竹中邦香同編, 朝鮮海通漁事情, 東京 團體社書店, 1893年, pp. 127—128.

것도 史上 그 類例를 찾아볼 수 없을 程度였다.

VI. 漁業에 關한 協定の 成立과 領海의 被奪

1908년에 이르러서는 所謂「漁業에 關한 協定」이라는 것을 內閣告示 第23號로서 當時의 內閣總理大臣이었던 賣國奴 李完用의 이름으로 公告함으로써 日本人에게 韓國人과 同等的 資格으로 韓海에서 漁業을 할 수 있는 權利를 附與하였다. 이 協定은 統監府 治下에서 日帝의 奸計에 의하여 造作된 것이었다.

1904年 露日戰爭이 勃發한 後에는 日本의 強請으로 韓半島 全沿岸이 日本人의 通漁區域에 編入되었으며 그로부터 韓海에서의 日本人의 漁業이 加一層 隆昌해짐에 따라 1908年 9月11日 統監 伊藤博文은 日本外務大臣 小村壽太郎에게 公翰을 띄어 「韓國에 있어서의 漁業의 發達을 期圖하고 日韓兩國漁民의 利益을 增進시키기 위하여 今般 韓國政府로 하여금 漁業에 關한 法規⁵⁴⁾를 制定 施行시키고자 함에 따라 日韓通漁에 關한 協定을 改正할 必要가 생겼다」고 하면서 漁業에 關한 4個條의 協定草案을 提示하고 意見을 물었다⁵⁵⁾. 이 草案에 異意가 없었던 小村 日本外務大臣은 即時 總理大臣 桂太郎에게 稟議하여 「本件의 決定은 日韓兩國現在의 關係上 特別히 協約의 形式을 取하는 것은 좋지 못하므로 統監과 韓國政府 사이에 單純한 公文의 往復함으로써 決定」하게 하자고 하였다⁵⁶⁾. 이는 곧 日本閣議의 議決을 거쳐⁵⁷⁾ 同年(1908年 10月 31日 다음과 같은 漁業에 關한 協定이 公告되었다⁵⁸⁾. 이는 韓國漁業法 施行日로부터 實施한다고 前文에 밝혀져 있는데 韓國漁業法은 翌年인 1909年 4月 1일부터 施行되었으므로⁵⁹⁾ 前記 協定도 그 때부터 發効하였다.

漁業에 關한 協定

內閣告示 第二十三號

韓日兩國臣民의 漁業에 關하여 韓國政府와 統監府는 本年十月三十一일에 協定書를 左와 갓치 定하여 韓國漁業法施行日로부터 實施함.

隆熙二年十一月十三日

內閣總理大臣 李 完 用

- 一. 日本國臣民은 韓國의 沿海, 江灣, 河川, 及 湖池에서 韓國臣民은 日本國의 沿海, 江灣 河川, 及 湖池에서 漁業을 營營을 得음.
- 二. 兩國의 一方臣民으로서 他一方의 版圖內에서 漁業을 營營하는 者는 其漁業을 營營하는 地에서 施行하는 漁業에 關한 法規를 遵守함이 可함.

54) 이는 日本의 操縱에 의하여 制定된 舊韓國漁業法을 말한다. 1908년에 制定된 韓國漁業法은 1909年 4月 1일부터 施行되었으며 (內閣法制局 官報課, 官報, 第4312號 隆熙 3年 2月 27日 土曜日), 이에 의하여 日本人은 財產權으로서의 漁業權을 附與하는 漁業權漁業도 免許받을 수 있게 되었다. 즉 沿岸 漁業權漁場의 奪取가 合法化되었던 것이다.

55) 日本外交文書, 第41卷 第1冊 p. 773 文書番號 777.

56) 同上, p. 773. 文書番號 778.

57) 同上, p. 774.

58) 內閣法制局官報課, 官報, 第4227號, 隆熙 2年 11月 13日 金曜 및 統監府編纂, 韓國條約類纂 1908年 pp. 943—944. 日本은 統監府告示 第186號로서 統監代理 副統監 曾福荒助의 이름으로 「漁業=關スル 協定」을 告示하였다.

59) 註 (54)와 同.

三. 韓國의 漁業에 關한 法規中 司法裁判所의 職權에 屬한 事項은 日本國臣民에 對하여는 當該日本官廳에서 此를 執行함.

四. 開國四百九十八年十月二十日明治二十二年十一月十二日 調印한 韓日兩國通漁規則 其他 兩國通漁에 關한 協定은 總히 此를 廢止함.

이로써 領海3海里原則을 適用한 朝日通漁章程을 비롯하여 其他通漁에 關한 모든 協定이 廢止되었고 日本人은 通漁에 關한 諸般手續을 밟을 必要없이 韓國人과 마찬가지로 韓國沿岸 및 內水面에서 自由롭게 漁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事實上 3海里에 局限된 領海마저도 拋棄한 것을 意味하는 것이며 日本은 韓日合併以前에 이미 韓國의 領海를 併合시켰던 것이다.

結 言

1609年「그로티우스」가「自由海論」을 發刊하여 國際法上 가장 重要한 原則의 하나인 公海自由의 原則의 基盤을 確立한 以來 從來 諸沿岸國이 主張하던 海洋領有의 範圍는 漸次縮少되는 反面 自由로 認定되는 海洋의 範圍는 漸次 擴大되어 갔다. 그리하여 19世紀에 들어서서는 領海3海里說이 實踐과 條約을 통하여 國際法上 確立된 原則으로 認定되기에 이르렀다. 1818年 領海3海里原則은 史上 最初로 英美間에 맺어진 海業에 關한 協定에 適用되었다. 19世紀末에 이르러서는 韓日漁業外交에 있어서도 領海3海里原則의 問題가 擡頭되었다. 189年 朝日通商章程이 締結되자 同章程 第41款의 規定에 의하여 日本人은 韓半島의 議定地方 海濱에 出漁할 수 있는 權利를 獲得하였다. 이로부터 日本漁船의 來漁로 漁場을 둘러싼 朝日兩漁民間의 紛爭이 發生하기 시작하였고, 1888年 釜山에서 벌어진 紛爭에서는 朝鮮側이 國際公法을 援引하여 이를 解決하려고 하였으나 同法의 領海3海里原則을 잘못 解釋하여 日本人이 操業할 수 있는 海域은 海濱3里以外라고 主張함으로써 兩國間에 領海3海里原則에 關한 最初의 論爭이 벌어졌다. 翌年에는 鬱陵島에서도 이와 비슷한 主張을 하여 紛爭이 생겼다.

그러나 1889年末에 締結된 朝日通漁章程에는 海濱3里라는 明文을 插入함으로써 領海3海里原則을 適用하였다. 이것은 韓日間에 領海3海里原則이 適用된 最初의 事例였다.

이 章程이 締結된 後에도 領海3海里原則에 關한 理解는 雙方 모두 不足하였고 특히 朝鮮側의 領海3海里原則에 대한 誤解는 쉽사리 풀리지 않아 1900년에는 馬山地方에서 釜山에서 벌어졌던 것과 비슷한 種類의 論爭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韓日間에 領海3海里原則이 일찍이 19世紀末에 適用된 것은 特記할만한 事實이나 수없이 많은 日本漁船이 朝日通漁章程에 規定된 節次를 밟지 않고 領海를 侵犯함으로써 領海3海里原則은 實質의 으로 잘 遵守되지 않았다.

1909年 韓半島에 대한 支配權이 高度로 強化된 日帝가 거의 獨斷의 으로 漁業에 關한 協定을 作成하여 施行하게 되자 韓半島의 領海는 事實上 日帝에 의해 被奪되었다. 이것은 日本이 韓半島를 併合하기도 前에 일어난 領海의 併合이나 다름없는 것이었다.

둘이켜 보건대 近代資本主義의 發展에 따르는 漁業의 資本制産業으로서의 成立發展은 漁業生産手段의 集積 및 大型化와 더불어 漁撈技術의 飛躍의 發展으로 漁獲努力과 漁獲強度가 果進의 으로 增加되어 왔다. 그리하여 各國의 漁業은 外延的 發展을 追求하여 行動半徑을 넓혀갔다. 이것은 水族의 自律更新의 再生機構에 의하여 限定되는 有限한 水産資源의

限界를 넘어 줄다름치는 危險性을 內包하고 있는 것이므로 諸國間的 相互牽制가 必然的으로 要請되기에 이르렀다. 그러한 相互牽制는 及其也 沿海3海里以遠은 公海라고 보아온 國際法上的 常識을 否定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고 이것은 領海範圍의 擴大의 形態로 發展되었다. 公海自由의 原則은 資本制의 大規模漁業의 發達에 따라 進化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水産資源을 枯渴 내지 荒廢시키는 結果를 招來할 可能性이 있는 自由는 이미 公海의 自由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다.

19世紀末에 있어서 韓日間の 漁業에 適用되었던 領海3海里原則이 20世紀 後半에 들어와서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도 이와같은 公海自由의 原則의 質的 變化와 領海範圍의 擴大라는 世界的으로 認定되는 一般的 傾向의 當然한 歸結인 것이다.

現今 「카라카스」에서 開催되고 있는 第3次 海洋法會議에서는 領海를 12海里, 經濟水域을 200海里로 그 幅을 飛躍的으로 擴大시키려는 움직임이 짙을 實現可能性을 지니고 擡頭되고 있다. 마야호로 領海 3海里原則을 總體的으로 否定하는 새로운 海洋利用秩序가 誕生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韓日間에는 領海問題를 둘러싼 微妙한 外交問題가 發生할 것이다. 이 時點에서 우리는 過去の 歷史를 돌이켜보고 이를 反省資料로 삼아 國際的 움직임을 銳意注視하고 우리의 國利를 위하여 適時에 適切한 對策을 能動的으로 講究해야 할 것이다.